

# 규정 교직원 출장비 규정

문서번호	TWP-A143
제정일자	1996. 05. 14.
개정일자	2024. 08.12.
개정번호 3	페이지 1/5

### 목 차

제1조(목적)

제2조(출장의 구분)

제3조(출장비의 종류)

제4조(출장신청)

제5조(복명)

제6조(출장비의 지급구분)

제7조(출장비의 계산)

제8조(출장일수의 계산)

제9조(출장 중 사망한 경우)

제10조(출장비지급)

제11조(출장비지급의 예외)

제12조(근무지내 출장의 여비)

제13조(출장비의 정산)

제14조(관련문서)

부칙

별표

작성부서 시	사무처 서무과	제정일자	1996. 05. 14.
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	승 인			
직 책	담 당	사무처장	행정부총장	부총장	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# 규정

# 교직원 출장비 규정

문서번호			TWP-	-A143
제정일자			1996.	05. 14.
개정일자			2024.	08.12.
	개정번호	3	페이지	2/5

	개정이력			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				
1	2009. 01. 30.	- 5차 개정				
2	2012. 07. 27.	- 대학규정집 개편으로 인한 전부개정				
3	2024. 08. 12.	- 국내 출장비 지급기준 개정(별표 지급기준 신설) - 규정 개정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				



# 규정

# 문서번호TWP-A143제정일자1996. 05. 14.개정일자2024. 08.12.개정번호3페이지3/5

## 교직원 출장비 규정

[2012. 7. 27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 교직원이 업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출장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출장의 구분) 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"국내출장"이라 함은 업무로 국내에 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국외출장"이라 함은 업무로 국외에 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1일 출장"이라 함은 당일로 귀임하는 출장을 말한다.

제3조(출장비의 종류) ① 출장비는 교통비, 숙박비, 식비, 일비의 4종으로 한다.

② 교통비는 철도요금, 항공요금, 선박요금, 자동차요금으로 구분한다.

제4조(출장신청) ① 업무로 인하여 출장을 명받거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일로부터 3일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일로부터 10일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교원은 교무학생처장에게, 행정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공인된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신청서에는 그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<삭제 2024.07.00.>[제11조제5항으로 이동<2024.08.12.>]

**제5조(복명)** 출장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, 교원은 교무학생처에, 직원은 소속 부서장 승인을 얻어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출장비의 지급구분)** 출장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.<개정 2024.08.12.>

제7조(출장비의 계산) 출장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 다만, 업무수행상의 현저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른다.

제8조(출장일수의 계산) 출장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한다. 다만, 천재, 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

## 규정

## 교직원 출장비 규정

문서번.	호.	TWP-	-A143
제정일	자	1996.	05. 14.
개정일	자	2024.	08.12.
개정번호	3	페이지	4/5

제9조(출장 중 사망한 경우) 교직원이 출장 중 사망한 때에는 순직처리 한다.

제10조(출장비지급) ① 국내출장비는 출장 행선지를 기준으로 근무지 내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며 근무지 내 지역은 별표 2의 근무지 내 여비 기준표로, 그 외 지역은 별표 3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4.08.12.>

- ② 국외출장비는 별표 4의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및 별표 5의 국외 여비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24.08.12.>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출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장비 지급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그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8.12.>
- ④ 출장비 지급을 위하여 이수증, 출장자가 포함된 현장사진, 출장지 인근에서 발급된 영수증 등 실제 출장이 시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. 다만 불가피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24.08.12.>

제11조(출장비지급의 예외) 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출장비를 감하거나 출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<삭제 2024.08.12.>
- ③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출장비 중 교통비, 식비, 숙박비에 대하여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이 대학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별도로 총장이 정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이 대학교 교직원 이외의 자를 출장에 대동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[제4조제4항에서 이동<2024.08.12.>]

제12조(근무지 내 출장의 여비) <삭제 2024.08.12.>

제13조(출장비의 정산) 출장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선급하고 출장일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귀임 후 즉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(관련문서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관련 내용을 참고한다.



#### TWP-A143 규정 제정일자 1996. 05. 14. 개정일자 2024. 08.12. 교직원 출장비 규정 개정번호 3 페이지 5/5

문서번호

##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## 부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여비 지급 구분표

구 분	대 상
제1호	총장, 부총장
제2호	처장
제3호	교수, 부교수, 원장
제4호	제1호, 제2호, 제3호에 적용받지 않는 교직원

## 근무지 내 여비 지급 기준표

(단위 : 원)

행건	선지	기준거리(km)	금 액	거리(약)	비고
파	파주 88km		60,000	70km이상~90km미만	교통비
가	·평	88km	60,000	60,000원	식대
일	산	86km	60,000		주차비
卫	. 양	83km	60,000		일비 포함
인천,	/부천	82km	60,000		(왕복기준)
王	.천	81 km	60,000		
안	산	79km	60,000		
오	.산	69km	50,000	50km이상~70km미만	
평	택	68km	50,000	50,000원	
의기	정부	65km	50,000		
서	울	59km	50,000		
수	·원	56km	50,000		
인	·성	51 km	50,000		
안	· 야 <u>:</u>	48km	40,000	40km이상~50km미만	
과	·천	48km	40,000	40,000원	
남양주		47km	40,000		
구리		44km	40,000		
. 8	·인	43km	40,000		
양	:평	38km	30,000	30km이상~40km미만	
성남(	(분당)	35km	30,000	30,000원	
하	·남	34km	30,000		
여	주	31 km	30,000		
광주	광주	24km	20,000	20㎞이상 30㎞미만	
~ ~ T	곤지암	8km	10,000	20,000원	
०	천	9km	10,000		

<sup>※</sup> 지역별 기준점 : 시가지 중심(시청, 지하철역 등)

<sup>※</sup> 하루 중 귀임을 하지 않는 복수건의 출장 시 출장비용은 원거리에 해당되는 출장지를 기준으로 지급 하며, 출장여건 개선을 위해 일비(25,000원)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# [별표 3] <신설 2024.08.12.>

##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

(단위:원)

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	버스운임	자동차	일비	숙박비	식비			
1 12	包工证 日	272 8	20TH	8011 1-11	운임	(1일당)	(1박당)	(1일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 (프리미엄)	정액	25,000	실비	30,000
제2호, 제3호, 제4호	실비 (일반실)	설비 (2등급)	실비	실비 (우등)	정액	25,000	실비 (상한액: 100,000)	30,000

#### ※ 비고

- 1. 각 교통수단 이용 시 정부에서 공인된 인가요금으로 한다.
- 2. 철도운임은 고속철도(KTX 및 SRT)를 우선하며 정차하지 않는 출장지일 경우 기타 노선으로 한다.
- 3. 버스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시자·특별자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며, 제1호의 프리미엄 노선이 운행 하지 않는 목적지일 경우 인근 시·도청 터미널의 노선 요금을 적용한다.
- 4.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구분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적용한다.
- 5. 항공 이용 시 공항까지의 이동 지원을 위해 이동지원비를 정액(50,000원)으로 지급한다.
- 6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정부서장이 부서원을 대동하여 출장 시행 시 일비의 최대 100%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- 7. 숙박비란의 실비는 「여신전문금융법」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.

## [별표 4] <신설 2024.08.12.>

#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

구분	항공운임
제1호	실비(1등석)
제2호, 제3호, 제4호	실비(2등석)

## 국외 여비 기준표

(단위:미 달러화)

구분	등급	일비	숙박비	식비
	가	40	실비(상한액: 282)	133
2.2	나	40	실비(상한액: 207)	99
제1호	다	40	실비(상한액: 162)	72
	라	40	실비(상한액: 108)	61
	가	35	실비(상한액: 223)	107
제2호, 제3호	나	35	실비(상한액: 160)	78
세2호, 세3호	다	35	실비(상한액: 130)	58
	라	35	실비(상한액: 85)	49
	가	30	실비(상한액: 176)	81
-11 4 <del></del>	나	30	실비(상한액: 137)	59
제4호	다	30	실비(상한액: 106)	44
	라	30	실비(상한액: 81)	37

#### ※ 비고

-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가등급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 D.C., 파리, 홍콩, 제네바, 싱가포르

#### 나. 나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베이징, 사모아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쿡제도, 타이 완, 파푸아뉴기니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멕시코, 미국, 바베이도스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이티, 앤티가바부다, 자메이카, 캐나다, 트리니다드토바고
- 3) 유럽주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가나, 가봉, 남수단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아랍에미리트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적도기니, 카타르,

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#### 다. 다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키즈공화국, 타이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, 피지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가이아나,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파나마
- 3) 유럽주: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몬테네그로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우크라이나, 체코, 크로아티아, 폴란드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기니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레바논, 르완다, 말리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수단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아프가니스탄, 알제리, 요르단, 이라크, 잠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#### 라. 라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미크로네시아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타지키스탄, 통가, 필리핀
- 2) 남 · 북아메리카주: 니카라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3) 유럽주: 마케도니아, 몰도바, 벨라루스,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, 알바니아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나미비아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예멘, 이란, 짐바브웨, 튀니지
- 2.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 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